

한-칠레 FTA의 정적 효과에 관한 고찰

문남권(한국외대)*

- I. 들어가는 말
- II.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특징
- III. 시장통합과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 I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세계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정책 혹은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FTA는 협정 당사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Balassa(1975)는 경제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분류한 바 있다. 실제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나 공동시장(Common Market) 혹은 현재의 유럽연합과 같은 보다 심화된 형태의 경제통합체가 다수 존재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결되는 경제통합체는 많은 경우 FTA의

* Nam-Kwon Mu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guelito@hanmail.net), "A Study on the Static Effects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1) FTA는 역내국간 교역에 대해서만 자유화를 실시하며 역외국에 대한 교역정책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자율성을 갖는다. 이에 반해 관세동맹은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며 공동시장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 EU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등 경제동맹의 단계까지 통합이 심화된 경우이다. 통합의 정도에 따른 경제통합체의 분류에 관해서는 Balassa(1975)와 Bhagwati et al.(1999)을 참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FTA가 대외공통관세가 필요하지 않고 역외국에 대한 자율적 정책 허용 등의 요인으로 다른 형태의 통합체에 비해 참여국간 합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전세계 경제통합체 193개 중 124개가 FTA인 점이 이를 반증한다(www.wto.org).

한국과 칠레가 2002년 10월에 체결하여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 2주년을 넘어섰다. 양 국가간 체결된 FTA는 여러 면에서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체결한 경제통합체이며 특히 자원부국이자 1차 상품 수출국과 맺은 시장통합이기 때문이다. 칠레로서도 최초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칠레 FTA는 경제통합의 물결(De Melo and Panagariya 1993, 3)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으려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제무대에서 시장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칠레와의 FTA가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경제통합체를 구성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학습효과의 목표가 있었다(정인교 2001, 1).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지닌 칠레와 교역자유화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칠레 FTA의 경제효과 분석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측면이다.

칠레로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잠재적 투자유치국이다. 한국과 달리 1990년대부터 적극적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 각국과 경제통합을 이뤄온 칠레(김원호 2005)에게 한국은 첫 아시아 상대국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국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통합을 아시아로 확대하면서 잠재적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은 경제통합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싱가포르(2004), EFTA(2005), ASEAN(2006)²⁾에 이어 최근 한국의 최대 교

2) 싱가포르와는 2004년 11월 협상 타결, 2005년 12월 국회비준 그리고 현재 발효 대기 중이다. EFTA 국가들(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는 2005년 1월 협상 개시, 12월 협정 체결하였다. ASEAN 국가들과는 2006년 5월 상품교역 자유화 부문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을 참조.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런 일련의 FTA 체결 행보에는 한국이 최초로 맺은 칠레와의 경제통합의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발효 2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엄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통합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Viner(1956, 41-56)가 관세동맹 이론에 의해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효과를 주창한 바 있다. 이 두 효과의 특징은 시장통합 과정에서 역내국간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이다. 역내국간의 관세특혜에 의한 배타적 자유무역공간의 형성이 가져오는 효과라는 점에서 FTA형태의 경제통합체 분석에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Lipsey 1957, 40-46).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통합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는 경제통합체의 심화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유럽연합(EU)의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체도 단순한 상품교역 자유화를 넘어서 서비스 교역, 무역규범 및 산업협력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통합체는 성장하는 생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여 왔다.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경제통합체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 동적(Dynamic) 효과와 제도적(Institutional) 효과를 새로운 범주로 제시하였다.

Lawrence(1996), Kuwayama(1999)와 World Bank(2000) 등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인 관세동맹이론은 정적(Static) 효과로 분류하고 통합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들을 동적 효과와 제도적 효과로 분류한 것이다. 즉 시장이 통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투자 창출 및 전환, 신뢰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본 글은 출범 2주년을 맞은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중 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양국간 경제통합이 FTA 형태로 출범됨에 따라 정적 효과가 가장 주요한 기대효과이자 실제 경제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간 시장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적 효과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다. 두 번째로는 양국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칠레 FTA의 무역부문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한-칠레 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양국에게 긍정적 후생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 자유무역협정이다(정인교, 2002)³⁾. 따라서 출범 전부터 한국 내에서 극심한 찬반양론에 휩싸인 한-칠레 FTA의 쟁점품목의 무역창출과 전환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본 글은 한-칠레 FTA의 정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양국 시장에서 상품별 무역동향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II.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특징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국간 시장을 통합하는 국제적 약속이자 제도이다. 제도는 당사자들의 협상과 합의내용에 따라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North 1990, 3-72; Mansfield and Miller 1997, 77-80). 현재 발효 중인 200개에 달하는 전 세계 경제통합체 중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경제블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경제통합체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해당 통합체의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한국과 칠레간의 경제통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은 시장을 통합하고 역외경제관계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형태이다. 따라서 통합의 정도가 다른 경제통합체와 비교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플러스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의 제도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3) 정인교(2002)는 한-칠레 FTA가 한국에 9억6천만 달러의 연간 후생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째는 상품교역 자유화에 치중한 경제통합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상품별 자유화 협상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크게 반영되고 제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구매, 분쟁해결 등의 비 상품교역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최근 FTA들의 추세를 따르며 WTO 플러스적인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자유화는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제도적 특징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II.1. 상품교역 자유화 부문

양국 FTA의 상품교역 자유화는 협정문 2부의 3장에서 9장까지에 담겨있다.⁴⁾ 양국 상품의 상대국 시장접근확대를 위한 관세인하 스케줄을 비롯해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규정, 세이프 가드, 반덤핑 관세, 위생조치, 표준관련 조치 등이 상품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 내용이다.

양국간 FTA의 핵심이 양국 상품 교역에의 장벽제거와 자유화인 만큼 이 부문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상품 교역 자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양국간 서로 다른 관세인하 스케줄과 민감 품목의 예외허용이다. 여타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역내국간 자유화일정이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어 관세가 철폐됨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에서는 한국과 칠레가 서로 다른 관세철폐 스케줄에 합의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에서 예외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상품교역 자유화일정을 보면 칠레는 7분류의 관세 철폐안(즉시, 3년, 5년, 7년, 10년, 13년, 예외)을 갖고 있는데 반해⁵⁾ 한국은 10분류의 복잡한 관세 철폐안(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DDA 이후 논의, TQ, 10년 S, 예외)⁶⁾을 설정했다.

4)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인용되는 모든 한-칠레 FTA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교문서 원문이 출처임을 밝혀둔다. <http://www.mofat.go.kr/pdffiles/AK.pdf>을 참조.

5) <http://www.mofat.go.kr/pdffiles/S2K.pdf>을 참조.

<표 1> 한국의 연간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10년 S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8.1.1	19.1.1	20.1.1
16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

자료: <http://www.mofat.go.kr/pdffiles/A1Ak.pdf>

이상의 것이 의미하는 바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한국이 상품별 민감도를 감안해 관세인하 스케줄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특정 상품을 고려한 관세철폐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쿼터량을 배정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물량 증가 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TQ 방식은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민감품목에 대하여 채택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칠레의 포도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10년 S”로 분류된 계절관세는 여타 FTA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산 포도 수확기간이 아닌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만 수입되는 칠레 포도에 대하여 관세를 10년 걸쳐 인하해 주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관세철폐구조는 시장에서 칠레 상품에 대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 내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자유화에서 관세인하 스케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특혜 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을 확인하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이다.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하느냐 개방적으로 하느냐는 역내경제통합이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한홍렬 1994, 22). 한-칠레 FTA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

6) <http://www.mofat.go.kr/pdffiles/A1Ak.pdf>을 참조.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경제통합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가 경제통합에서 원산지 규정이 역외국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방무역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첫째 한-칠레 FTA는 원산지 산정 방식에서 보편적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를 정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특정공정(Specific Processing)’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 세번변경과 부가가치산출 방식을 병행하고 있지만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여타 경제통합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역내부가가치 산정에 있어서 공제법 사용시 45%, 직접법 30%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⁷⁾. 이는 원산지를 엄격하게 정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른 통합체의 60%와 55%에 비하여 낮은 기준으로서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⁸⁾.

둘째로 원산지 규정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원산지 발급방법을 업계자율발급제도로 한 점이다. 즉, 수출업자가 정해진 서식에 맞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다. 비록 협정문 제5장 5.2조 8항에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정부당국 혹은 위임된 기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있지만 상기와 같은 제도는 통관 절차 간편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상품교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제도 중 중요한 사항인 긴급수입제한

7) 한-칠레 FTA의 원산지 규정은 <http://www.mofat.go.kr/pdf/files/Annex4k.pdf>를 참조.

역내부가가치산정 직접법: $RVC = \frac{VOM}{AV} \times 100$,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AV는 조정가격, VNM는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8) 협정문은 또한 원산지 규정에서 누적계산과 조정가격 8%의 최소허용수준을 인정하고 있다.

조치(Safe guard)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양국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 모두 WTO 규정을 활용했다. GATT 6조, 19조, 긴급수입 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다.

II.2. 비 상품교역 자유화 부문

한-칠레 FTA 협정문 하반부인 10장에서 21장은 투자, 서비스, 정부구매와 지적재산권외에 분쟁해결절차 등의 기타 행정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하반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서비스 부문의 제한된 자유화이고 둘째는 투자와 같은 일부분야에서 다자무대의 자유화를 뛰어넘는 진일보한 FTA 모델 구축이다.

한-칠레 FTA의 전반적 특징인 상품무역 자유화 중심은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유화로 인해 명확해진다. 11장에 명기된 서비스 분야는 금융, 보험, 사회보장, 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가 유보되었다.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다른 자유무역협정들이 신금융서비스, 우편, 통신, 의료 분야에서까지 일부 자유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해 한-칠레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자유화가 진척되지 않았다.

양측은 11장 11.7조 1항에서 매 2년마다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어느 정도 양허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양국은 또한 13장에서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역 편의성과 교역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칠레 FTA 비상품 교역분야의 두 번째 특징은 일부 부문에서 다자무대보다 앞선 자유화가 이루어진 점이다. 투자부문에서는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활용하여 개인투자자가 상대 국가를 상대로 국제협약에 의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4장의 경쟁(Competition) 분야도 양국의 경쟁정책에서 협력을 합의하며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16장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이행에 더하여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보성녹차와 칠레의 피스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19장의 분쟁해결방식은 절차가 명확하고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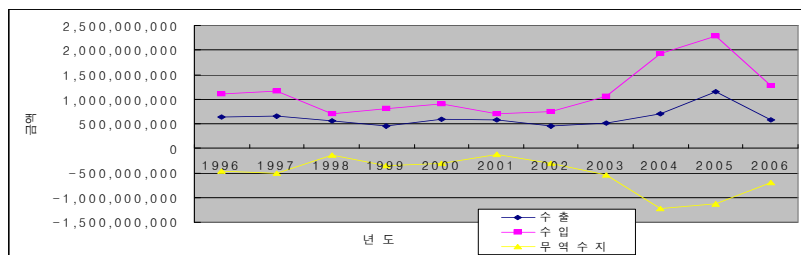
III. 시장통합과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III.1. 관세양허안과 수출입 동향

한국과 칠레의 경제통합은 점진적 자유무역실행의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최대 16년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 양국은 10년의 기간 동안 각각 94.5%와 96.5%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있다(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민감 품목일수록 관세 감축 기간이 장기화되고 후반기에 관세 감축폭이 커지는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시장통합 방안으로 인해 양국 FTA의 경제적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화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양국 FTA 이후 한국과 칠레의 무역동향은 일단 수출입 증가로 인한 무역규모의 확대에 집약된다. 교역규모 증가는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통합의 가시적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과 칠레의 수출입 동향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위의 표는 2006년 5월까지의 무역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의 대칠레 수출입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을 보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칠레가 전통적으로 한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구도는 FTA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04년에는 칠레의 수출증가율이 82.8%로 한국의 대 칠레 수출증가율 3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수치는 2005년에 17.9% 대 65.2%로 상황이 역전되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3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2006년에는 5월까지 43%대 45%로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칠레에 크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따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수출입 증감동향이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FTA의 시장양허안과 상대국 시장에서 개별품목의 경쟁력 변화여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2. 칠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변화

칠레의 대한국 수출품이 1차 상품 위주였던 것과 달리 한국의 대칠레 수출품은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칠레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된 칠레시장에서 FTA로 인한 관세특혜는 경쟁력 증가에 가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2년간 한국 상품들의 수출액과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요인이 모두 관세인하 덕분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통합의 정적 효과가 일부 실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 수출은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2.9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다가 시장통합 첫해인 2004년 3.12%, 2005년 3.61%,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 4.53%까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결과는 FTA 발효 이전 한국 상품 점유율이 2001년 3.34%에서 2002년

2.81%로 급락한 이후 증가한 것이어서 자유무역의 효과를 가정케 한다.

<표 2> 칠레의 한국 제품 관세 양허안

구분	비중(%) ¹⁾	품 목
즉시	67.6	자동차, 기계류, 핸드폰, 광물성연료(경유), PVC, 필름, 섬유, 의류, 철강제품, 잡제품 등
5년	16.4	경유, 플라스틱 제품(폴리에틸렌 등),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	0.8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등
10년	4.2	산업용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진공소제기 등
13년	4.0	승용차용 타이어, 철강제품, 조명기구 등
예외	6.9	냉장고, 세탁기 등
합계	100	100

주1) 2001년도 한국의 대 칠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pdf/files/A1Ak.pdf>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 주요 수출품들 중 주요한 품목들인 자동차, 핸드폰, 철강제품 등이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제품들 중 일부 품목, 특히 관세 철폐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면세 예외품목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한국의 대칠레 수출 10대 품목 비중과 구성 변화

2003			2006		
품목	비중(%)	수출 증가율(%)	품목	비중(%)	수출 증가율(%)
자동차	31.39	28.6	자동차	36.45	41
석유제품	15.8	78.2	석유제품	20.43	315.1
합성수지	9.72	41.1	합성수지	11.16	32.5
무선통신기기	4.79	-28.5	무선통신기기	6.13	-26.3
자동차부품	4.08	4.6	영상기기	3.71	108.5
가정용회전기기	3.26	-20	자동차부품	2.21	12.4
영상기기	3.04	-21.7	건설광산기계	1.85	28.3

고무제품	2.46	14.3	고무제품	1.70	18.5
철강관 및 철강선	1.62	203.7	철강관	1.68	106.6

주) MTI 3단위 분류에 의한 상품 분류임.⁹⁾

주) 2006년 통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위의 표를 보면 칠레가 수입하는 한국제품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비중이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회전기기만 10대 품목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MTI 3단위 구분 가정용 회전기기는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즉시 관세철폐 품목인데 반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세탁기는 자유화 예외품목인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가 미친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칠레시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상품을 세 분류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출범과 동시에 관세면제 특혜를 받은 상품군, 점진적 관세감면 대상 상품군, 그리고 자유화 면제 상품군이다. 서로 다른 관세 양허안을 적용받는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통해 관세특혜와 자유무역이 갖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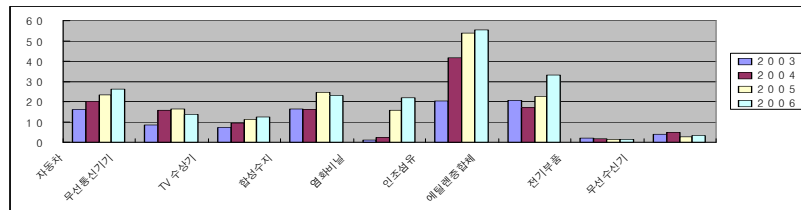
III.2.1. 출범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은 상품들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혜택을 받은 한국 상품들은 발효당시 한국의 대 칠레 수출 중 67% 가량을 차지하던 다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상품들이 자동차, 핸드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일부 의류 제품들이다. 이들 상품들의 FTA 발효 후 실적을 보면 다수 상품에서

9) 10대 수출상품 분류에서 MTI 분류법을 사용한 것은 상품군 별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에 품목별 통계에서 HS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국제무역에서 보편화된 관세코드로서 한국의 무역통계는 MTI 분류도 통계자료 획득이 가능하지만 칠레 시장 자료의 원천인 WTA는 HS 분류로만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 향상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액은 증가하였지만 경쟁격화로 인한 점유율 하락도 나타났다.

<그림 2> 칠레 시장에서 한국 무관세 제품들의 시장점유율 변화¹⁰⁾



주) 2006년은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임.
 자료: World Trade Atlas¹¹⁾

위의 그림에 나타난 9개 품목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무관세 혜택을 받은 상품들이다. 이 들 중 합성수지, 섬유 제품 등은 시장점유율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기부품과 무선수신기기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두 제품의 특징은 칠레 시장의 평균 수요증가율 35.2%와 27.5%에 못 미치는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HS 코드 8527번의 무선수신기기의 경우 수출액 자체가 감소했다. 대신 경쟁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EU 국가들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에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는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일본에 29% 대 16%로 절반 수준이었던 시장점유율이 관세특혜 만 2년 만에 2006년 26%대 25%로 1%차로 수입시장 1위로 올라섰다.

III.2.2. 점진적 관세인하 대상 품목들

한국과 칠레 FTA에서 점진적 관세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칠

10) 해당 품목들의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8703, 무선통신기기: 8525, TV 수상기: 8528, 합성수지: 3907, 염화비닐: 3904, 인조섬유: 5503, 에틸렌중합체: 3901, 전기부품: 8529, 무선수신기: 8527

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World Trade Atlas의 데이터는 KOTRA 무역자료실에서 조사되었다.

래의 시장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품들이다. 철강관을 비롯해서 건설용 기계 및 전자부품 등이 점진적 관세인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표 4> 칠레시장에서 점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양허안과 시장점유율

관세인하기간(Phase-out Period)			시장점유율 변화(%)			
HS 코드	품목	관세인하 기간	2003	2004	2005	2006
2710	경유	5년	15.16	7.87	10.21	19.94
3907	아세탈수지 외	0.3.5.7년	16.48	16.17	24.69	22.86
7210	철강관	5.10.13년	10.76	9.24	13.07	20.3
3903	스틸렌 중합체	0.5년	6.97	7.1	13.54	22.73
8704	화물자동차	0.13년	6.26	6.89	7.22	9.43
8708	자동차 부품	0.5.10.13년	5.86	5.32	6.2	6.76
8702	10인 이상 차	0.5년	11.79	11.64	6.11	9.24
8429	건설용 기계	0.5년	2.47	3.82	4.6	4.2
8544	전선, 케이블	0.5.10.13년	3.28	2.99	7.47	7.13
8507	축전지, 배터리	5.10년	20.88	20.41	17.26	12.6

주) 2006년 자료는 1-5월까지 데이터임.

자료: World Trade Atlas

위의 표는 점진적 관세인하 품목들 중 10개의 대표적 상품군을 보여준다. 8507번의 배터리를 빼고는 대부분 FTA 발효 이전보다 증가한 시장점유율을 보여준다. 자동차에 이은 한국의 제2위 대 칠레 수출상품인 경유는 발효 첫 해와 둘째 해는 역무역전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에 경유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한국, 베네수엘라이다. 이중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12%에서 2005년 67%로 급등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미국의 점유율이 56%로 하락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이 조금씩 향상되었다. 상기 4개국은 모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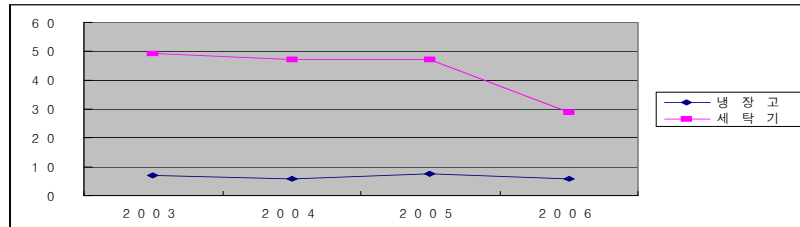
아세탈과 스틸렌의 39번 합성수지 품목들은 점차 시장점유율이 많

이 향상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8429번의 건설용 기계들은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출증가율은 칠레 시장의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불도저, 트랙터와 같은 건설장비를 주로 수출하는 경쟁국들은 미국, 브라질,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인데 이들 중 동기간 독일과 스웨덴의 수출증가율은 312%와 126%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31.7%로서 동기간 칠레시장 수요증가율 31.9%에 조금 못 미쳤다. 상기 경쟁국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칠레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III.2.3. 자유화 예외 품목들

한국시장에서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쌀, 사과, 배 등의 품목이 기존 수입 물량이 매우 작았던데 반해 칠레 시장에서의 자유화 예외품목들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FTA 발효 이전 세탁기는 49% 냉장고는 7%대의 칠레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이었다.

<그림 3> 칠레 시장 자유화 예외 품목의 시장점유율 변화



주) 2006년 자료는 1-5월까지 데이터임.
 자료: World Trade Atlas

위의 그림을 보면 양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FTA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탁기는 49%에서 2006년 상반기 28%로 낮아졌으며 냉장고는 5.93%로 하락하였다. 세탁기의 경우 동기간 경쟁국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5%에서 55%로 그리고 대만의 시장점유율

은 11%에서 23%로 상승하였다. 양국은 아직 칠레와 FTA를 발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수출을 증가시켰다. 냉장고의 경우 멕시코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낮아진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칠레 시장에서 관세양허안의 차이에 따른 상품별 경쟁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래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보편화해온 칠레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관세특혜가 경쟁력 향상에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레는 전 세계 47개국과 17개 FTA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결 후 발효 대기 중인 FTA도 6개나 되는 등 세계 국가들 중 최다 FTA 체결국가이다. 칠레의 FTA 망은 남미와 중미의 이웃국가들로부터 시작해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칠레 시장이 실질적으로 완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며 무관세 혜택이 더 이상 특혜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2005년 11월 18일 FTA를 체결하여 현재 의회 비준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일본과 칠레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 있다. 경제통합체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6%의 단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칠레가 주요 교역상대국들과는 모두 0% 단일관세를 시행하면 FTA의 정적 효과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III.3. 한국시장에서 칠레 상품의 경쟁력 변화

칠레의 대 한국 수출은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상품에 집중된 독특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는 양국간 FTA 발효 전후로 의미있는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리 이외에 칠레의 대 한국 수출의 주요 품목들은 농업과 수산업 상품들이다. 이외에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부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표 5> 칠레의 대한민국 수출 10대 품목 비중과 구성 변화¹⁾

2003			2006 ²⁾		
품목	비중(%)	수출 증가율(%)	품목	비중(%)	수출 증가율(%)
동제품	49	19.5	동제품	44.30	57
동광	20.71	81.7	동광	29.20	62.5
제지원료	7.78	17.7	기타석유화학제품	5.64	28.3
기타석유화학제품	7.83	64.62	제지원료	3.93	22.4
기타금속광물	0.97	141.5	기타금속광물	2.74	-46.6
육류	2.87	376.7	곡실류	2.50	46.8
철광	1.45	-61.2	철광	2.36	36.9
목재류	1.55	-37.9	육류	2.25	-3.9
수산가공품	1.49	32	아연광	2.09	186.6
아연광	0.99	-18	정밀화학원료	0.90	138.9

주1) MTI 3단위 분류에 의한 상품 분류임.
 주2) 2006년 통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상기 표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2003년과 2년이 경과한 후인 2006년 5월까지의 칠레의 대한민국 10대 수출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칠레로부터의 전체 수입 중 구리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 비중은 2003년 69.71%에서 2006년 73.50%로 상승했다. 두 번째 특징은 구리를 포함한 10대 품목의 전체 수입 중 비중이 95.97%에 달해 사실상 상기 10대 품목이 칠레 수출의 대다수를 점한다는 것이다. 이 비중 또한 동기간 94%에서 증가했다. 세 번째로는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새롭게 무역이 창출된 상품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와는 반대로 칠레로부터의 전반적 수입증가는 관세인하 특혜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즉, 주요 교역품의 수입선 전환과 수입 증가액이 칠레로부터의 전반적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FTA의 관세인하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대 칠레상품 관세양허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 6> 한국의 칠레 제품 관세양허안

구분	품 목
즉시	동광, 아연광, 종우, 종돈, 밀, 호밀, 귀리, 수수, 커피 등
5년	포도주, 위스키, 소주, 닭, 장미, 난초, 아몬드, 코코아, 초콜릿, 두부 등
7년	동피, 복숭아 통조림, 잼, 옥수수, 감자, 호두 등
9년	키위, 망고 등 기타 과일주스 등
10년	홍어, 돼지고기, 닭고기, 요구르트, 건포도, 복숭아, 딸기, 멜론 등
10년 S	포도
16년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배말기(조제저장), 혼합주스 등
TQ+DDA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만다린(100톤)등
DDA 이후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보리, 콩, 팥, 고구마, 계란, 꿀, 감귤, 대추, 잣, 밤 등
예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쇠미 등 21개 품목 ¹⁾
합계	100

주1) HS 코드 10단위 기준 21개 품목임.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pdffiles/A2ABK.pdf>

위의 관세양허안을 살펴보면 우선 칠레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제품인 동피와 동광은 각각 7년 관세철폐 그리고 즉시 철폐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품목의 기준관세인 2003년 1월 1일 실행관세가 각각 5%와 1%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 밖에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 포도주, 키위, 홍어, 돼지고기 등은 5년부터 10년, 계절관세 등으로 장기간 관세인하 품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 인하 외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칠레 상품들의 경쟁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 수출품목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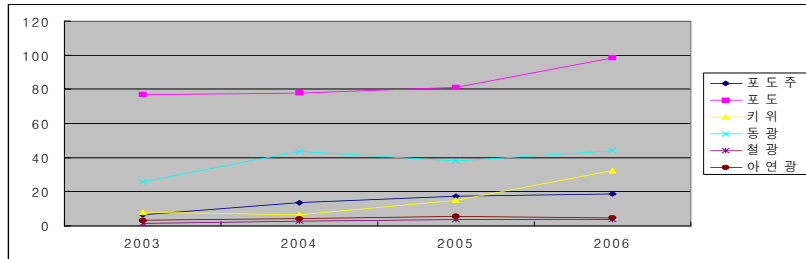
III.3.1. 무역전환(Trade diversion) 상품들

특정 시장에서 개별 수입 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는 국내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이다. 이 경우 수입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환율 요인이다. 수출국의 화폐가치가 기준화폐 대비 등락이 있는 경우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하면서 경쟁력 변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수출국 시장의 현지 상품가격 변화이다. 생산가격 변화는 수출가격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이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이다.

무역전환이란 칠레 상품이 무관세 또는 상대적 저관세 특혜를 받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입선이 기존의 여타 경쟁국으로부터 칠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시장통합이 역내 회원국에 갖는 정적 효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발효 이후 해당 품목의 평균 수입 증가율보다 높으며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칠레 상품들을 무역전환 상품들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품목들은 역무역전환을 겪기도 하였으며 다른 품목들의 경우 대 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 중 대표적인 무역전환 상품들은 동광, 아연광, 철광, 포도, 포도주, 키위로 조사되었다. 동광은 동괴 다음의 제2 칠레 수출품이다. 실행관세가 1%에서 즉시 관세철폐 면제를 받았으며 다른 수출국들은 1%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HS코드 2603번의 동광제품들은 2003년 시장점유율이 22.5%에서 FTA 발효 첫해인 2004년 44%로 점유율이 급증했다.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수출이 일시 증가했지만 2006년 전반기에는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62%로 14.4%와 32%의 양국을 다시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 4> 한국 시장에서 칠레의 무역전환 품목들¹²⁾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위의 그림에서 보면 관세철폐의 효과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품목은 포도이다. 특히 2006년 상반기(1-5월)에 보면 칠레 포도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98.54%로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FTA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정한 계절관세구조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포도 비 출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기간 동안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상반기 포도 수입시장은 칠레 포도가 독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정적 효과를 잘 증명하고 있다. 즉 1년 단위의 시장점유율이 80%인데 비해 관세혜택을 받는 기간에는 수입시장점유율이 98%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포도주와 키위의 경우는 칠레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국 순위가 바뀐 경우이다. 칠레 포도주는 2003년까지는 2위 수출국이던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출을 하였지만 발효 1년이 지난 2005년부터는 한국시장의 제2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시장점유율은 2003년 불과 6%에서 2006년 18%까지 성장하였다. 포도주의 일반관세는 15%인데 반해¹³⁾ 칠레는 2006년 현재 7.5%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12) 연구 대상 품목들의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동광: 2603, 아연광: 2608, 철광: 2601, 포도주: 2204, 포도: 080610, 키위: 081050

13) 한국의 수입품목별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는 관세청 관세율 표 <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경쟁국간 포도주와 키위의 관세차이와 시장점유율 변화¹⁾

	포도주					키위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프랑스	15/ 49.54	15/ 45.44	15/ 36.90	15/ 33.39	뉴질랜드	45.5/ 79.97	45/ 85.54	45/ 80.08	45/ 50.36
칠레	15/ 6.53	12.5/ 13.81	10.0/ 17.56	7.5/ 18.73	칠레	45.5/ 7.80	41.4/ 6.45	37.2/ 14.99	33.1/ 32.28
미국	15/ 15.70	15/ 14.04	15/ 13.99	15/ 16.65	미국	45.5/ 12.21	45/ 8.0	45/ 4.91	45/ 2.61

주1) 각국의 데이터 중 앞의 것은 해당년도 적용관세이며 슬래시(/) 뒤의 것은 수입시장 점유율임.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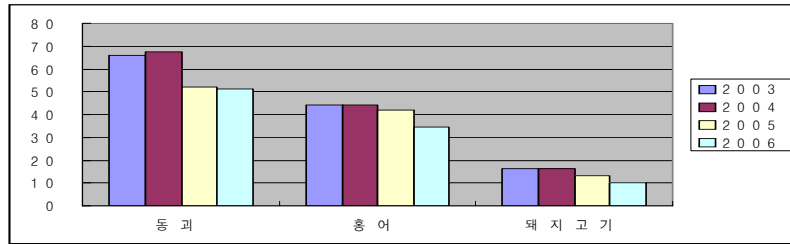
키위는 칠레의 수출액과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관세인하 효과와 FTA로 인한 칠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추정된다. 키위는 FTA 발효 전 45.5%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던 품목이다.¹⁴⁾ 10년에 걸친 관세인하로 인해 2006년에는 33.1%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타 경쟁국들에 비해 약 28%의 가격 경쟁력 향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칠레는 한국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뉴질랜드에 이은 제2위 키위 수출국이 되었다. 포에서 보듯 시장점유율은 2003년 7%에서 2006년 32%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III.3.2. 다른 무역인과관계에 영향을 받은 품목들

연구결과 칠레 수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장률과 시장점유율이 경쟁상품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상품들이 나타났다. 경제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에 역행하는 이런 결과들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함을 입증한다.

14) 한국의 키위 기본세율은 50%였으나 현재 FTA 미체약국들은 WTO 협정세율 45%를 적용받고 있다.

<그림 5> FTA 발효 후 한국시장에서 역무역전환이 발생한 칠레 상품들¹⁵⁾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그림에 나타난 동괴는 칠레 제1의 수출상품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2006년 현재 칠레의 대한민국 수출 중 44.30%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5%의 일반 관세에서 칠레는 7년에 걸쳐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되지만 칠레의 시장점유율은 발효 전 65%였던 것이 51%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칠레와 함께 한국의 주요 동괴 수출국인 잠비아 상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현재 한국에 동괴를 수출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은 칠레 외에 잠비아, 호주, 중국, 일본, 남아공 등이다. 이들 경쟁국들 중 잠비아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칠레는 3.1%의 특혜관세를 다른 국가들은 5% 일반관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잠비아 동괴의 수입이 2005년 75%, 2006년 80% 증가함으로써 칠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칠레도 FTA로 인한 특혜를 받지만 잠비아의 무관세에 역무역전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8> 역 무역전환 현상이 발생한 칠레 수출품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 요인

품목	시장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
동괴	경쟁국(잠비아산) 제품이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가격우위 보임. 잠비아산 동괴의 수입 대폭 증가

15) 해당상품들의 HS 관세코드는 다음과 같다. 동괴: 7403, 홍어: 0303799093, 돼지고기: 0203

홍어	10년의 장기 관세철폐 구조에 칠레산 제품의 단가가 경쟁국보다 높음
돼지고기	칠레의 돼지 생산량 부족과 일부는 위생 문제로 한국 수출 중지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농수산물 유통공사, www.at.or.kr, 경제화(2006)

홍어는 35%의 실행관세에서 출발해 칠레는 현재 25.40%의 특혜적용을 받지만 다른 국가들도 27%의 조정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경쟁국들간 관세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칠레 홍어의 수입단가가 경쟁국인 아르헨티나와 미국보다 높다. 그 결과 칠레 홍어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포도, 포도주, 키위와 함께 칠레 4대 수출농산물이다. 광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보이는 품목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 돼지고기의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절대금액으로서의 수입물량과 금액은 FTA 발효 이후 매년 5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 돼지고기 시장이 2004년과 2005년 81%와 77% 상승한 덕분이었다. 그리고 칠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다.

그 원인으로서의 경쟁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증대 및 칠레의 생산량 부족과 일부 수출중지 때문이다. 칠레의 돼지고기는 경쟁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이 22.5%의 WTO 협정세율을 납부할 때 16.9%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음에도 점유율은 하락한 것이다. 경쟁국 중 미국이 2005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으며 칠레와 벨기에 제품은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IV.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칠레가 2004년 4월 1일에 발효시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중 상품교역에서 관세철폐의 정적효과를 고찰하는 데 있었다. 경제통합이 보편적 국제경제관계로 자리잡은 현재 국가들이 시장을 통합하는 주요 목적이 무역창출과 무역

전환의 정적 효과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칠레 양국의 지역경제통합체 결성의 주요 목적도 정적효과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칠레 FTA는 상품교역 자유화에 중점을 둔 통합체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특별히 정적효과 고찰이 중요하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통합을 배우는 “학습효과”로서의 한-칠레 FTA가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현재의 세계화된 국제교역에서 양자간 FTA로 인해 새로운 상품이 교역되는 고전적 의미의 무역창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특혜관세와 자유무역이 양국 시장에서 발생시키는 무역전환에 두어졌다. 무역전환은 구체적으로 특혜관세 대상 수출품들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점유율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국에서 상대국 수출품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관세특혜와 경쟁력 향상간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 관세특혜가 무역전환의 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체가 결성될 때 회원국간 관세인하가 경쟁력 향상으로 자동전이되리라는 기대는 곤란하다는 점도 밝혀졌다.

FTA와 같은 경제통합체의 효과 측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시장, 특히 무역에 개입되는 인과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혜관세가 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의 일반화 또는 공식화는 어렵다. 현실에서는 특혜관세보다 더 중요하게 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에서도 칠레 상품이 한국에서 관세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 감소, 수출금지와 같은 여건 발생, 산지에서의 높은 단가, 타 경쟁국 상품의 무관세 혜택 수혜, 환율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한 사례도 목격되었다. 칠레 상품이 경쟁국에 역무역전환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한-칠레 FTA는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대국 시장에서 양국 상품의 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통

합체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양 국가의 FTA는 경제통합체 운영에서 통합체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상품교역 자유화 중심의 통합체 특성상 서비스 부문에서는 양국간 시장통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세양허안의 내용에 따라 상품 경쟁력도 차별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체는 어떠한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체의 제도가 어떻게 디자인 되느냐에 따라 통합체 운영의 결과도 결정되기 마련이다. 한-칠레 FTA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양자 FTA의 정적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주요 교역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효과를 고찰해 보았다. 한-칠레 FTA는 2년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관세 인하가 진전될수록 더 큰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후 보다 많은 자료를 갖고 순수 FTA의 효과에 대한 보다 계량적인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complished its second anniversary this year. This treaty has several important meanings to two parties. As its first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bloc, Korea has expected to get "Learning effect" as well as the export increase. Also this trade bloc means for Chile the first market integration with Asian country.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Static Effect" that might have caused this trade bloc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Generally speak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Static", "Dynamic", and "Institutional" effects to the intra-bloc participants. Korea-Chile FTA is characterized as the trade liberalization focused FTA.

Because of its institutional design, this FTA could have more strong static effect than dynamic or institutional effects. The static effect means the economic consequences that bring the elimination of tariff, that is, the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tra-bloc parti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have been in limited scope the trade diversion in favor of the member nation of the bilateral FTA. The tariff elimination have certain correlation with the trade flow. But also it'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there are many factors intervening in the trade flow.

Key Words: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Integration, Trade Diversion, Trade Creation, Customs Union / 한-칠레 FTA, 경제통합, 무역전환, 무역창출, 관세동맹

논문투고일자: 2006. 07. 20

심사완료일자: 2006. 08. 03

게재확정일자: 2006. 08. 11

참고문헌

- 김원호(2003), 「칠레의 패러독스」, in 조돈문 외 편,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pp. 71-104.
- 정인교(2001), 「한-칠레 FTA 추진의 배경과 정책시사점」, 세계경제 9 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8-33.
- _____ (200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오늘의 세계경제, 제2-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0.
- 정재화(2006), 「한-칠레 FTA 발효 2년 수출입 동향분석」, 『한-칠레 FTA 2년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세균(2006),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해 2년의 평가」, 『한-칠레 FTA 2년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홍렬(1994),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KIEP 정책연구, pp. 94-102.
- Balassa, B(1975),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North-Holland.
- Bhagwati, Jagdish(1999), *Trading Bloc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De Melo, Jaime and Arvind Panagariya(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wayama, Mikio(1999). *Open Regionalism in Asia Pacific and Latin America: a survey of the literature*, Chile: CEPAL.
- Lawrence, Robert Z.(1996).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Lipsey, Richard G.(1957),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Trade Diversion and Welfare”, *Económica* 24, February, pp. 40-46.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ner, Jacob(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41-56.
- World Bank(2000), *Trade Blo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한-칠레 FTA 협정문, <http://www.mofat.go.kr/pdffiles/AK.pdf>
- 한-칠레 FTA 칠레 관세철폐 계획, <http://www.mofat.go.kr/pdffiles/S2K.pdf>
- 한-칠레 FTA 한국 관세철폐 계획, <http://www.mofat.go.kr/pdffiles/A1Ak.pdf>
- 한-칠레 FTA 칠레 관세인하 스케줄, <http://www.mofat.go.kr/pdffiles/A1Ak.pdf>
- 한-칠레 FTA 한국의 관세인하 스케줄, <http://www.mofat.go.kr/pdffiles/A2ABK.pdf>
-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 <http://www.mofat.go.kr/pdffiles/Annex4k.pdf>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 칠레 경제부, www.economia.cl
- 칠레 통계청, www.ine.cl
- 칠레 투자국, www.prochile.cl
-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국, www.direcon.cl
- 칠레 관세청, www.aduana.cl
- 칠레 중앙은행, www.bcentral.cl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go.kr
- 한국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World Trade Atlas, www.gtis.com